



문서번호	총무과-5232
결재일자	2015.2.2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92호

주무관	인사팀장	총무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	
이은정	송재훈	이창호	소판수	전결 02/27 이비오	
협 조	보건위생과장		정주섭		
	재무과장		김성철		

- 임기제공무원 -
2015년도 연봉 정기조정 계획

2015. 2.



성 동 구
(총 무 과)

사 전 검 토 사 항

:::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약(약속)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인센티브/공모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구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이해당사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영향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른 공공언어 <input type="checkbox"/> 성 인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 애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 자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요인 <input type="checkbox"/>
타자원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서 울 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언 론 홍 보 계 획	기획보도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도자료 <input type="checkbox"/> SDTV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뉴스레터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구소식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고 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행정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S N 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리플릿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없 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홍 보 제 목 : ● 중점 홍보사항 - - 	
<p>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/p>	

- 임기제공무원 -
2015년도 연봉 정기조정 계획

전년도 업무실적을 토대로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 성과급적 연봉액을 조정하고자 함

I 개 요

1. 관련근거
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6장 (대통령령 제25965호)
- 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(안전행정부 예규 제10호)

2. 조정 대상자: 98명 (일반임기제 25명, 시간선택제임기제 73명)

- 2014. 12. 31. 현재 우리 구 소속 임기제공무원 ('14.12.31. 퇴직자 제외)
- ※ '15. 1. 1. 이후 동일직급 재채용자(5년 만료) 포함, '15. 1. 1. 이후 신규채용자는 제외

3. 조정 기준일: 2015. 1. 1.

4. 보수의 구성

○ 연 봉: 기본연봉 + 성과연봉

- 기본연봉: 전년도 기본연봉액 + 전년도 성과연봉 중 가산액 + 처우개선분
- 성과연봉: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당해연도에 지급

○ 연봉외 급여

-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, 연가보상비,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특수근무수당, 특수지근무수당, 대우공무원수당 등

II 채용 유형별 연봉 조정기준

구 분	성과연봉 가산액 (정책조정액)	처우개선분 (2014년)	비 고
2014년도 중 기간연장자	반영	반영	단, 정책조정액은 2014년 성과연봉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
2014년도 중 근무기간만료 후 연속하여 동일등급(분야) 재채용자	미반영	반영	기존 임기제 신분이 계속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임 (성과연봉 가산액 미반영)
2015. 1. 1.이후 근무기간만료 후 연속하여 동일등급(분야) 재채용자	반영	반영	2014.12.31.기준이므로 정책조정액 및 처우개선분 모두 반영
※ '14.12.31. 이전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시 '14년 보수규정상 해당등급 하한액으로 결정하였으나, 실제 임용일은 15.1.1.이후인 경우: '15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기준 등급별 하한액을 적용함			

III 2015년 연봉액 조정

1. 기본 연봉

2015년 기본연봉 = ① 2014년 기본연봉액 + ② 2014년 성과연봉 중 가산액
(가산기준액 × 가산율) + ③ 처우개선분

① 2014년 기본연봉액: 2014년도 기 책정된 기본연봉액

② 2014년 성과연봉 중 가산액

< 가산기준액 >

(단위 : 천원)

5급(상당)	6급(상당)	7급(상당)	8급(상당)	9급(상당)
37,613	31,077	27,129	23,862	20,011

※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위 기준액을 근거로 1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

< 가 산 율 >

등 급	S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
가산율	7%	5%	3%	0

※ 위 표의 등급은 2013년 업무평가결과에 따른 2014년도 성과연봉 등급임.

③ 처우개선분: (① + ②) × 4.5% * 근무연수 10년이상 기준

- 2015년도 호봉제 공무원에게 적용된 기본급 평균 인상 효과 반영(4.5%)

※ 근무연수 10년 미만인 경우: 근무연수별 4.21% ~ 4.47% 차등 적용

2. 성과 연봉 (☞ 평가 기준일: 2014. 12. 31.)

①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

• 평가등급별 인원 = 대상계급의 현원 × 평가등급별 인원비율

*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내에서 소수점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고,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한다.

* 다만, 평가대상 현원이 4인인 경우의 등급별 인원은 S등급 1명, A등급 1명, B등급 2명으로 하고, 평가대상 현원이 1인인 경우에는 A, B, C 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.

< 예시 : 현원이 16명인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 >

대상인원	S등급(20%)	A등급(30%)	B등급(40%)	C등급(10%)
16인	3인(3.2)	5인(4.8)	6인(6.4)	2인(1.6)

② 평가그룹(지급단위) 결정

- 동일 직급 내 업무의 유사성·동질성에 따라 평가그룹을 통합하여 선정

※ 붙임 지급단위별 평가대상자 명단 참고

③ 성과연봉 지급액 산출

• 성과연봉 지급액³⁾ = 계급(등급)별 성과연봉 기준액¹⁾ × 평가등급별 지급률²⁾

*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(단, 백원단위가 '0'일 때에는 절사)

1) 계급(등급)별 성과연봉 기준액

(단위 : 천원)

5급(가급)	6급(나급)	7급(다급)	8급(라급)	9급(마급)
69,986	57,823	50,477	44,398	37,232

*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위 기준액을 근거로 1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

2)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

평가등급	S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
인원비율(%)	20%	30%	40%	10%
지급률(%)	7%	5%	3%	미지급

3) 평가등급별 성과연봉 지급액

(단위 : 천원)

구분	S등급(7%)	A등급(5%)	B등급(3%)	C등급(0%)
5급(가급)	4,899	3,500	2,100	-
6급(나급)	4,048	2,892	1,735	-
7급(다급)	3,534	2,524	1,515	-
8급(라급)	3,108	2,220	1,332	-
9급(마급)	2,607	1,862	1,117	-

*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(단, 백원단위가 '0'일 때에는 절사)

*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위 기준액을 근거로 1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

④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

- 근무실적 평가점수로 순위를 정한 후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

IV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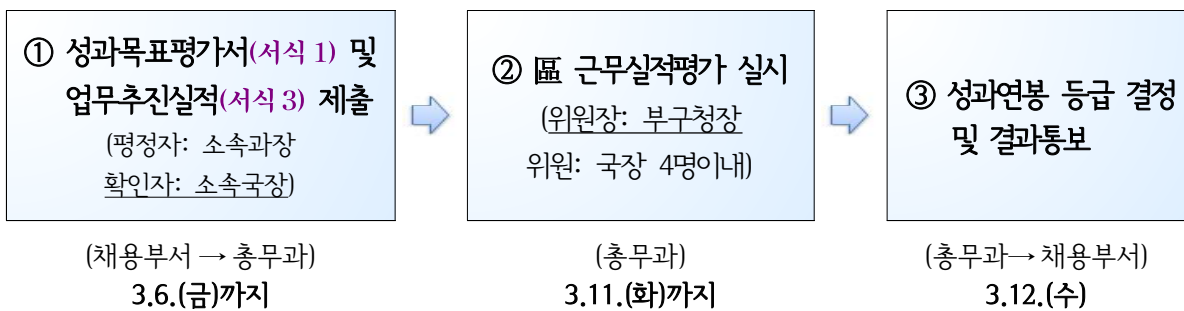
근무실적평가 (평정점 순으로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)

1. 평가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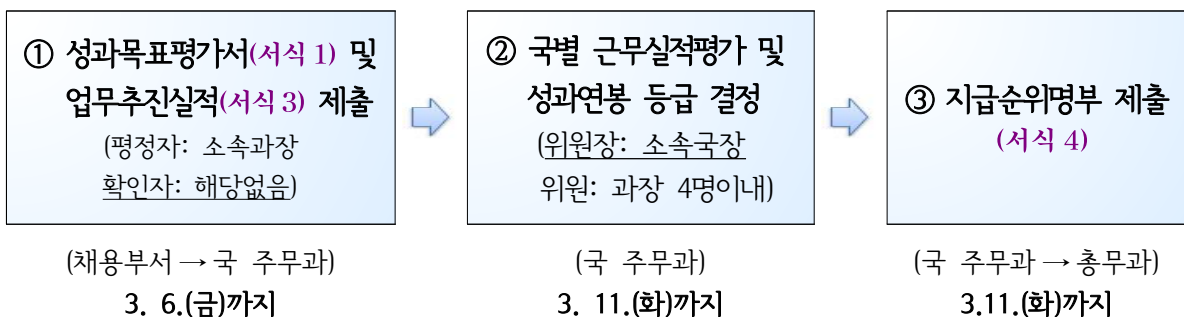
- 평가기준일: 2014. 12. 31.
- 평가대상기간: 2014. 01. 01. ~ 2014. 12. 31.
- 평가대상: 총 98명 (일반임기제 25명, 시간선택제임기제 73명)
 - ※ 단, '15.1~2월중 근무기간연장을 위해 최종평가를 기실시한 경우 평가 생략 (평정점 그대로 반영)
- 평가방법
 - 본인평가: 평가대상자가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 제출
 - 1차 평가: 소속 부서장 ※ 7급(다급) 이상은 소속국장 확인
 - 2차 평가: 구 또는 국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종합평가

○ 평가절차(흐름도)

1) 평가대상자가 '7급 상당(다급) 이상' 일 경우



2) 평가대상자가 '8급 상당(라급) 이하' 일 경우



2.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

- 기 능: 평가대상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, 동일 점수자 서열결정 등
- 구 성: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
- 종 류: 구 근무실적평가위원회 [5급(가급) ~ 7급(다급) 평가]
국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 [8급(라급) ~ 9급(마급) 평가]

3. 근무실적평가 결과 반영

-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

평가등급	S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
인원비율(%)	20%	30%	40%	10%
지급률(%)	7%	5%	3%	미지급

- 근무실적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한 후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에 따라 성과연봉 책정등급 결정
- 2014. 1 ~ 2월 중 근무기간 연장을 위해 근무실적평가를 기 실시한 경우에는 평정점을 그대로 반영하여 성과연봉 책정등급 결정
- 휴가·휴직·신규임용·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연봉 평가등급의 최하위에 배치함.

V 행정 사항

- 기본연봉 책정: 2. 11.(수) 완료
- 7급(다급) 이상 성과목표평가서 및 업무추진실적 제출 (채용부서): 3. 6.(금)까지
- 8급(라급) 이하 성과연봉 지급순위 명부 제출 (국 주무과): 3. 11.(화)까지
- 연봉 전산입력 및 소급 정산 (재무과·보건위생과): 3월 봉급 지급 시
- 2015년도 성과계획서(서식 2): 채용부서 자체보관 (피평가자 작성)

- 붙임 1. 성과목표평가서 등 제출서식 각 1부.
2. 지급단위별 평가대상자 명단 1부. 끝.

(서식 1)

2014년도 성과목표평가서

1. 평가대상자 인적사항

소 속	채용등급	성 명	채용기간	담당업무	평가대상기간

2. 단위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 ☞ 피평정자 작성

① 단위목표	② 성과측정 기준	③ 추진일정	④ 업무비중(%)	목표달성도 평가		
				⑤ 본인평가(%)	⑥ 부서장 1차 평가(%)	⑦ 근무실적평가 위원회평가(%)

⑧ 최종 평정점: 점, ⑨ 평가등급:

3. 업무실적 요약

1. - 2. -

4. 평정자 의견

--

작성일: 년 월 일

평정자(부서장) 직급 성명 (서명)

7급(다급) 이상일 경우만 해당 ☞

확인자(국장) 직급 성명 (서명)

※ 작성요령

- ① 단위목표: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 기재
- ② 성과측정기준: 단위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
- ③ 추진일정: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
- ④ 업무비중: 단위목표가 전체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(%)을 기재하되,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%가 되도록 함
- ⑤ 본인평가: 임기제공무원 자신이 직접 단위목표에 대한 성과달성도를 100%를 기준하여 평가함
- ⑥ 1차 평가: 근무부서의 장(과장, 동장)이 단위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100%를 기준하여 평가함
- ⑦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: 본인평가 및 근무부서의 장(1차 평가)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평가 함.
- ⑧ 최종 평정점: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정점(⑦)의 합계
- ⑨ 평가등급: 최종 평정점(⑧)에 따라 5단계(S, A, B, C, D등급)로 구분함
 - * S등급(95점 이상), A등급(86점 이상 ~ 95점 미만), B등급(80점 이상 ~ 86점 미만), C등급(75점 이상 ~ 80점 미만), D등급(75점 미만)

(서식 2)

2015년도 성과계획서

피평가자	직		성명	(인)
평가자	직		성명	(인)

1. 인적사항

소속	채용등급	성명 (연령)	근무기간 (약정기간)	담당 업무	월봉급액	자격면허학위

2. 업무성과목표

○ 전반적인 성과목표

(임기제공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기재)

○ 전반적 목표달성을 위한 단위목표

① 단위 목표	② 성과측정 기준	③ 추진일정	④ 비고
○ ○ ○ ○ ○ ○	○ ○ ○ ○ ○ ○		

[작성요령]

① 단위목표 :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

② 성과측정기준 :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 함.

③ 추진일정 :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

④ 비고 : 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

(서식 3)

업 무 추 진 실 적

인적사항

소 속	채용등급	성 명	생년월일	근무기간	비고

업무추진실적 (2014.1.1.~12.31.)

주 요 내 용	비고
<input type="checkbox"/> ○	
<input type="checkbox"/> ○	
<input type="checkbox"/> ○	
<input type="checkbox"/> ○	

작성자 (본인): 소속 직급 성명 (인)

(서식 4)

○○○○국 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

○ 일반임기제 8~9급(라~마급)

직급(등급)	순위	소속부서	성명	근무실적평가		성과연봉 평가등급	비고
				평정점	등급		
8급(라급)	1		(예시)	90	A	S	
	2			88	A	A	
9급(마급)	1						
	2						
:							

※ 근무실적평가 등급(S,A,B,C,D)과 성과연봉 평가등급(S,A,B,C)은 별개임

※ 근무실적평가점수 순으로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(인원비율 S:A:B:C=20:30:40:10)

○ 시간선택제임기제 8~9급(라~마급)

직급(등급)	순위	소속부서	성명	근무실적평가		성과연봉 평가등급	비고
				평정점	등급		
8급(라급)	1						
	2						
9급(마급)	1						
	2						
:							

2015년 월 일

위원장 ○○○○국장 ○ ○ ○ (서명)

위 원 ○○○○과장 ○ ○ ○ (서명)

위 원 ○○○○과장 ○ ○ ○ (서명)

위 원 ○○○○과장 ○ ○ ○ (서명)

위 원 ○○○○과장 ○ ○ ○ (서명)

근무실적 평가등급 및 성과연봉 평가등급 구분

□ 근무실적 평가등급 (※ 성과연봉 평가등급과 별개임)

- 성과목표 달성도 등 평가점수에 따라 S(탁월), A(우수), B(보통), C(미흡), D(부진)의 5개 등급으로 구분

등급별	S(탁월)	A(우수)	B(보통)	C(미흡)	D(부진)
평가점수	95점이상	86점이상~ 95점미만	80점이상~ 86점미만	75점이상~ 80점미만	75점미만
근무기간 연장시 반영기준	보수인상 (기준범위내)	보수인상 또는 보수동결	보수동결 또는 보수삭감	보수 삭감	약정해지
	연장 가능				

※ 위 표는 연봉조정 또는 근무기간 연장(해지) 하는 경우에만 적용

□ 성과연봉 평가등급

- 근무실적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한 후 아래표의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에 따라 성과연봉 책정등급 결정

평가등급	S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
인원비율(%)	20%	30%	40%	10%
지급률(%)	7%	5%	3%	미지급

* 휴직·직위해제·대기발령·휴가·신규임용·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가등급 최하위(C등급)에 배치

- 단, 2015년 1~2월 중 근무기간 연장을 위해 근무실적평가를 기 실시한 경우에는 평정점을 그대로 반영하여 성과연봉 책정등급 결정

(예시) 같은 지급단위(평가그룹)내 평가대상자가 3명일 경우,
 성과연봉 평가등급 인원비율(S:A:B:C=20:30:40:10)을 적용하면,
 직원 1) 근무실적평가 90점 (A등급) → 성과연봉 평가등급(S등급)
 직원 2) 근무실적평가 88점 (A등급) → 성과연봉 평가등급(A등급)
 직원 3) 근무실적평가 86점 (A등급) → 성과연봉 평가등급(B등급)